

힘이되는 평생친구, 보건복지부



## 질 병 관 리 본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기준 및 신고 안내 협조요청

1. 관련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항

2.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4군감염병에 ‘지카바이러스 감염증(Zika virus infection)’이 지정(2016.1.29일 시행)됨에 따라 신설된 진단기준과 별지서식을 보내드리오니,

3.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동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력이 있는 의심환자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기준 1부.
- 2. 별지서식(제1호, 1-2호, 1-3호서식) 1부. 끝.

질병관리본부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

보건연구사 박숙경      보건연구관 대결 2016. 1. 29.      박선희

협조자

시행 감염병감시과-266      (2016. 1. 29.)      접수

우 28159    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     질병관 / http://  
리본부 감염병감시과

전화번호 043-719-7165      팩스번호 043-719-7188      / monica23@korea.kr     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